

정책제언 I

올해 도내 체불 임금 35% 증가, 엄중한 처벌을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임금 체불액이 올 들어 대폭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임금 체불액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3,414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합의 등이 이뤄지지 못해 재판까지 간 사례는 753건에 이른다. 임금 체불액으로 보면 올해 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임금 체불 사업장에는 음식점, 도소매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도 있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규모가 심각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막힌다. 임금 체불이 곧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높아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노동자가 합의만 해주면 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도 남아 있다. 사업주들은 체불 임금 일부만 주고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부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 변제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임금 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심각한 범죄다. 근로자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임금을 떼먹고도 버젓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용납해선 안 된다. 임금 체불은 형법상 절도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중대 범죄다. 경제 위기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나 사업장이라도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됐다.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은 점검·단속 차원을 넘어 엄정한 사법 처리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자살사망률 3위 안전망 강화를

연간 국내 자살 사망수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강원은 연간 500여명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소도시로 이뤄진 강원도 시도 자살사망률 상위여서 관심이 요청됩니다. 강원도는 2018년 갑작스럽게 사망자 37명이 더 늘어난 이후 500명대 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예방 정책을 종합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은 중소도시보다는 주변 친밀도나 소통이 더 힘든 대도시가 많은데 강원도가 3위여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도내 2017년 자살사망자는 470명이었으나 2018년 507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509명과 508명이었습니다. 원주가 123명으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천 85명 강릉 56명 순입니다. 인구 대비 자살률은 횡성, 정선, 고성, 고성군이 높으므로 세밀하게 짚어야 합니다.

표준인구로 바꿔 전국 시도를 비교한 결과 강원도는 32.7명으로 전국 평균 26명을 크게 웃돕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 45.4명, 여성이 19.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게 나타나므로 유의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119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직과 무직 상태로 경제 여건이 열악하고 독거 남성 및 고령자 희생이 두드러집니다.

자살 위험은 통상적인 소통으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감정 표현에 익숙지 않은 점과 외부 소통을 통해 해소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 정신적 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요 시를 제외하고는 정신보건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진료 상담을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용이 쉽지 않은 점도 요인을 보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정신보건센터 사례 상담 등 복지서비스는 더 활성화돼야 하고, 주기적인 생명보호 캠페인과 기관 간 협력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자살 예방은 필수 포함하도록 하고, 열악한 곳은 맞춤형 사업을 통해 문제점 발견 보완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등에게 치명타를 주는 사회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정신건강은 뒤쳐질 수 있습니다. 자칫 실직이 생명 희생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는 다각적이어야 합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부동향

국토교통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LH 혁신방안

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 *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
(개선)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 추가 → LH 영향력 배제, 자체 브랜드 공급

-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협약 등 인센티브 제공

②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 * 설계·시공 → 조달청 / 감리 →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
-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 * (대상자) 2급이상 퇴직 → 3급이상 퇴직 / (대상업체) 200여개 → 4,400여개
(재취업 판단기준)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공공기관 최초)

③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 2.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 * (현행) 주택 → (확대) 다중이용 건축물(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정부동향

-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기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주기적 인증)

②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③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 * 숙련 기능인의 공종별 팀장 배치는 국토부 소관 공공공사부터 적용후 확대

④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 *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 → (개선)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
-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를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19일 시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동향

■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 예를 들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를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년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1.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안 제20조·제28조·제29조, 안 별표2 비교제3호)

○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 (하수도사업)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평가 면제
- (도로·철도사업)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 산정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정부동향

2.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2의2제2호다목)

- 재난 예방·복구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주민 등 의견수렴과 본안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3. 전략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신설(안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2항)

- 전략환경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의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기한 조정(20일 → 30일 이내)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안 별표2제2호파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 규정(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토록 규정

2.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5조제2항제8호)

-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 변경 등 협의내용 통보시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시 변경협의

3.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 조정(안 별표3 3호)

-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
 - *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4.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구분 명확화(안 별표3 15호)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신설

현행	개선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 설>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30\text{만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5\text{만제곱미터}}$ 나)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330\text{만세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용적}}{25\text{만세제곱미터}}$

5.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신규 추가 및 명확화(안 별표3제2호, 제15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제곱미터 이상) 신규 추가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규정

정부동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안 별표4 비고 4호 다·마·자목)

-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내 사업으로서 오염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단,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는 제외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공간 활용 등을 위해 지정

-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송전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안 별표4 비고 11호)

-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은 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3. 소규모 평가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 변경협의 대상 판단시 10년 기한 적용

구분	현행	개선
사업규모	· 30% 이상 증가 ·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 30% 이상 증가 · 10년 이내 최소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토지이용	· 부지면적 30% 이상 변경	· 부지면적 30% 이상 (녹지면적 감소 없는 경우 제외)

《기타》

1.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안 별표5의2)

구분	현행	개선
기술자격	· 기사자격 취득자 ·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 기사자격 취득자 · 1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환경분야 근무
학력경력	· 석사학위 취득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 공공기관 등 근무자는 환경분야 10년 이상 근무	· 학사학위 이상 취득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업무 수행 · 공공기관 등 근무자는 환경분야 10년 이상 근무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행정안전부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 본격 추진 -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미세먼지 재난대응 추진 사례〉

-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설치된 49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대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40대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 중으로 올해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 울산시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스트로브잣나무·해송 등 35종, 1만 7천여본의 나무를 심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완화를 도모한다.

정부동향

- 경기도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신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 대구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서 10~11월 중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충청남도는 지역 내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와 공동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 마을에 마을대기측정망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질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하여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하여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초미세먼지(PM2.5) △당일 50 μ g/m³ 초과 + 다음날 50 μ g/m³ 초과 예보, △다음날 75 μ g/m³ 초과 예보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 미세먼지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4일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른 부문별 대책도 지자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 (대상차량)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솔차
 - 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배출 미세먼지를 검사한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사업장 불법배출을 감시한다.
 - 국민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청소차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를 운행한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여 청소횟수를 확대(1일 1회 → 2~4회 이상)한다.
 - 이외에도 공사장, 지하역사, 대규모 시설(지하도상가, 대합실 등), 농촌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프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개선 모델

 유 자 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지 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지역별 재난안전 수요·공급에 따른 지역 유형화

- 위해·취약·경감·의식지표로 구성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서 지표별 1~5단계 등급으로 도출됨
 - 위해지표와 취약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위험 가능성을 측정하여 이것이 높으면 해당 지역의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경감지표와 의식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위험에 대한 대응을 측정하여 이것이 높으면 해당 지역의 재난안전기능 공급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지역안전지수에 근거한 1차 지역 유형화와 2차 재난안전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심층 분석지역을 시·군·구 별 3개씩 심층 분석지역을 추출함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기능 강화

- (조직신설형) 재난안전 수요가 높고 상대적으로 공급 수준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로 ‘도시형’, ‘일반 시’, ‘특·광역시 자치구’ 유형의 기초 자치단체의 읍·면·동에 재난안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공주도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함
- (신규업무분장형) 재난안전 수요가 공급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나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시형인 ‘일반시’와 ‘특·광역시의 자치구’, 농촌형인 ‘일반군’ 지역과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증원된 인력에 재난안전 업무분장을 추가함
- (민간자원활용형) 재난안전 발생 수요 수준에 비해 공급 수준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도시형’, ‘농촌형’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실현가능한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 강화 모델 제안

-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 강화 모형은 재난안전 기능 강화의 필요가 시급한 정도와 개입의 정도가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조직신설형을 장기적 대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신규업무분장형과 민간자원활용형을 제시함

01. 읍면동 재난안전기능 강화의 필요성

-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
 - 기존 중앙의 하향식(Top-Down) 재난안전 관리체계는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대응에 한계를 보임
 -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나 현장의 초기대응을 위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해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와 그 하부기관인 읍·면·동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정책브리프

- 기초 자치단체와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강조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그 피해 유형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재난안전 수요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즉, 재난안전 관리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지역 특성 즉, 시·군·구 재난안전 정책환경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강화 모델을 도출함
- 인력증원, 기능재배치, 민관협력 등 지역 맞춤형방안 모색
 - 공공부문 인력동결을 전제로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로는 민관협력과 주민자치 및 복지 인력을 활용하는 것부터 장기로는 재난안전 전담 인력의 읍·면·동 배치까지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읍·면·동 재난안전관리 기능에 필요한 적정인력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02. 지역맞춤형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유형화

- 지역안전지수에 근거한 시·군·구 군집분석
 - 지역안전지수를 통한 재난안전수요 공급 파악하는데, 위해지표와 취약지표를 통해 지자체 재난안전기능의 수요측면, 경감지표와 의식지표를 통해 재난안전기능의 공급측면을 파악함
 - 지역안전지수의 등급은 동일 유형의 자치단체 간 비교 가능하므로 시·군·구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유형화를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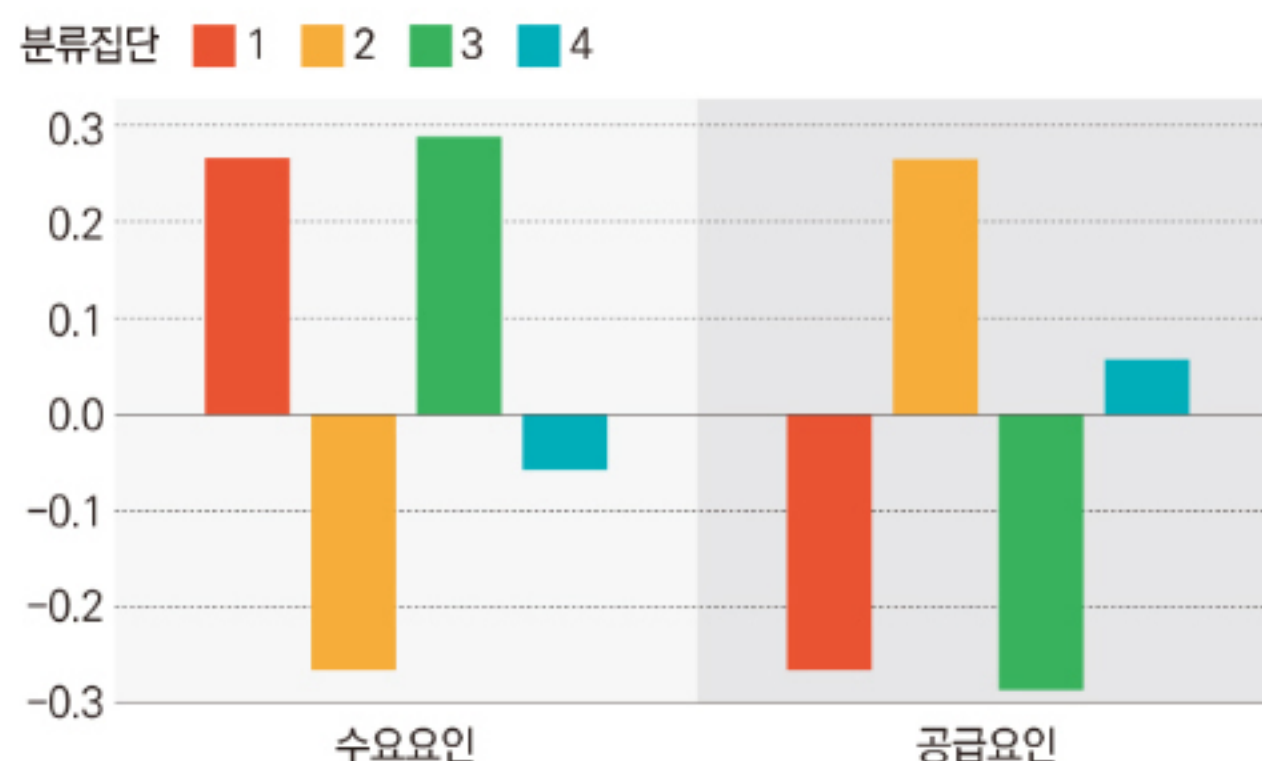
• 지자체 재난안전 기능 수요 및 공급 •

재난안전 기능	조작적 정의	활용 데이터
수요	•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피해,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측면	• 6개 영역 지역안전지수의 위해 및 취약지표
공급	•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응하는 활동 측면	• 6개 영역 지역안전지수의 경감 및 의식지표

*자료 : 연구진 작성

- 227개의 시군구 중에서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지역을 선별함
 - 시 지역의 경우 집단3과 집단1이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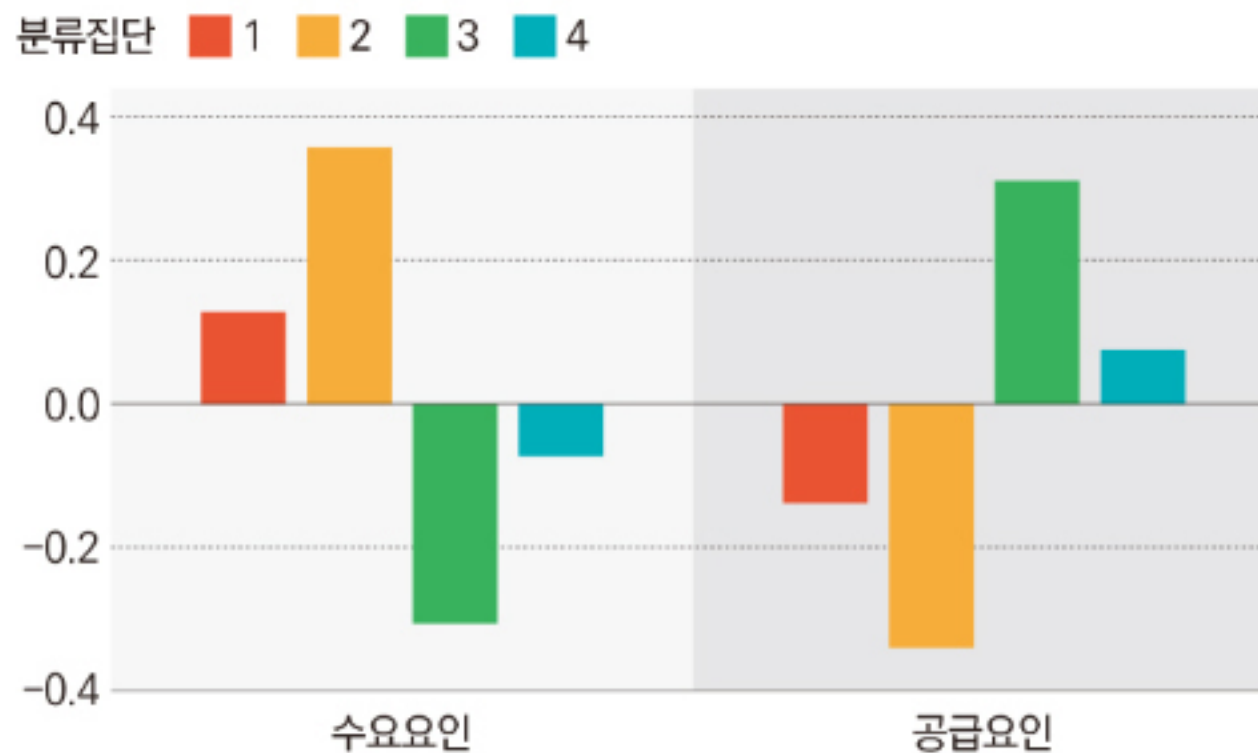
• 시지역 군집분석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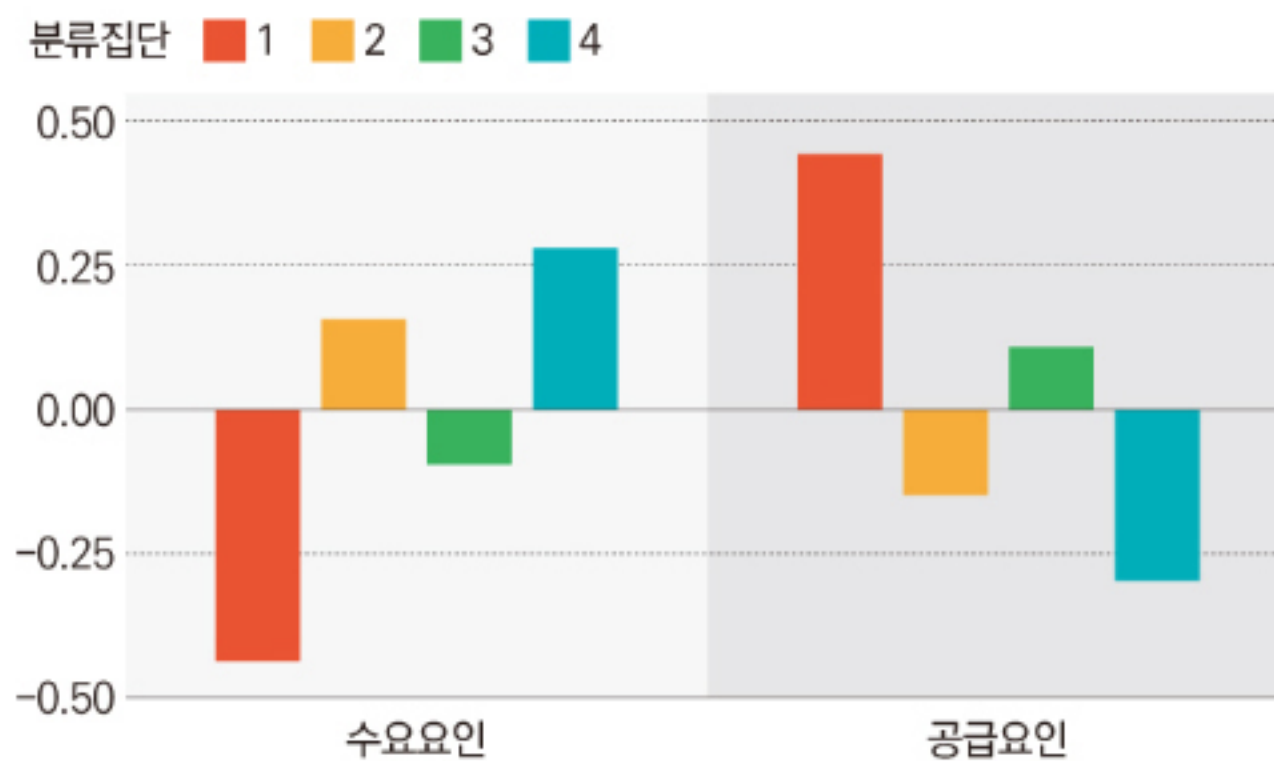
정책브리프

· 군 지역의 경우 집단2와 집단1이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해 높음

● 군지역 군집분석 결과 ●



● 구지역 군집분석 결과 ●



· 구 지역의 경우 집단4와 집단2가 재난안전기능 수요가 재난안전기능 공급에 비해 높음

● 자연재난 수요를 고려하여 2차로 지역을 유형화

- 심층분석 지역을 추출하여 시·군·구 별 3개씩 심층 분석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면담조사를 수행함

· (시 지역)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의정부시, 충남 보령시가, (군 지역)에서는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인제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구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남구가 선정됨

03. 지역맞춤형 읍·면·동 재난안전기능 강화전략

● 재난예방 및 대비 단계의 다양한 정책수단 검토 및 읍·면·동별 적합한 모델 탐색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역 재난안전거버넌스 활성화는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이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민관협력의 구체화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지역마다 재난안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종류, 참여 수준과 방식 등이 지역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안되어야 중앙에 의한 획일적 개편의 부작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음

정책브리프

• 재난안전 전담 기구인력 신설형

- 재난안전 발생 수요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공급 수준이 낮은 ‘도시형’, ‘일반 시’, ‘특·광역시 자치구’ 유형의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읍·면·동 재난안전 전담팀을 조성하여 공공주도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함
 - 풍수해나 폭염,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도심의 안전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취약지역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확장될 수 있음
 - 고시원, 반지하, 좁은 골목, 높은 경사 등 주거취약가구 비중이 높고, 1인가구, 노인, 장애인, 어린이 안전취약계층 규모가 많음
- 행정직, 방재직, 복지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신설함: 방재안전직을 적극적으로 총원·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인사고과를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함

• 신규 업무분장형

- 재난안전 수요가 공급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나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시형인 ‘일반시’와 ‘특·광역시의 자치구’, 농촌형인 ‘일반군’ 지역과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을 공식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방식을 취함
- 읍·면·동에 별도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조직구조에 재난안전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공식적으로 분장하는 방안임
- 2017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증원된 인력에 재난안전 업무분장을 추가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재난안전 기능을 관리하도록 함
 - (도시형) 행정팀 내 주민자치 업무인력은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관리하기 용이함
 - (농촌형) 맞춤형 복지팀 인력에 재난안전 업무를 분장하는데, 복지 및 안전취약계층의 중첩 정도가 도시형에 비하여 농촌형이 큰 편이기 때문에 업무 역시 중첩될 가능성이 높음

• 민간자원 활용형

- 재난안전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형’, ‘농촌형’에 적용하되, 지역 유형에 따라 협력을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민간자원 종류가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
 - 도시형의 경우 이·통장,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링단, 안전보안관 등 다양한 안전관련 민간단체 활동이 뚜렷함
 - 농촌형의 경우 안전과는 관련이 없어도 마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로 이·통장,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 내 근린 단체 활동이 뚜렷함
- 다만, 읍·면·동 재난안전 민관협력기구 통솔 역할을 해당 읍·면·동 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민간단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상시에는 민간 주도의 주민 안전 관리, 주민 상호 간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재난시에는 읍·면·동 장을 중심으로한 긴급하고 긴밀한 협조가 유효함
 - 즉, 읍·면·동장은 사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단체별 역할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재난사고 발생 시 단체 역할을 독려하고 단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04. 3가지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시점별 전략 전환

-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직신설형을 장기적 대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신규업무분장형과 민간자원활용형을 제시함
 - 민간자원활용형에서 읍·면·동장이 공무원과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정자(coordinator)와 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할 때 민관협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
 - 중기로는 읍·면·동의 공식적 업무분장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사무·업무 들을 공식화하는 신규업무분장형을 제안함
 - 조직신설형은 장기로는 필요한 지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선별하여 적용하되, 이는 현 정부의 공공 인력동결 기조를 고려하여 이루어짐

출처 :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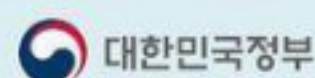
알기쉬운 정책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생활·교육·돌봄 ‘지원’ 꼭 확인하세요!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어려운분들에게 힘이되는 생활·교육·돌봄 ‘지원’ 꼭 확인하세요!

6약자 복지 편



생활비 부담 덜어드리는 생계급여 확대

→ **더 많은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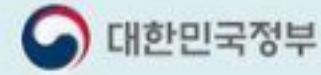
- 대상 확대 : 160만 명('23년) → **170만 명('24년)**
* 기준 중위소득 32%까지
- 금액 확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3년	62만 3,368원	103만 6,846원	133만 445원	162만 289원
'24년	71만 3,102원	117만 8,435원	150만 8,690원	183만 3,572원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알기쉬운 정책



미래를 준비해요 교육급여 인상

→ 더 많은 가구에 교육비를 더 드립니다.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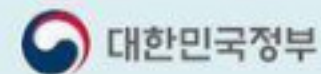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초·중·고 학생
[기준 중위소득 기준 확대로 대상 증가]

✓ 지원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3년	41만 5,000원	58만 9,000원	65만 4,000원
'24년	46만 1,000원	65만 4,000원	72만 7,000원

✓ 신청 및 문의

- Q 복지포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로 돌봐드리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 가족의 부담을 더 줄여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정

✓ 지원 내용

- 학습·놀이 등을 지원하는 장애아돌보미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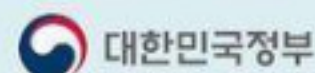
'23년	960시간
'24년	1,080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본인부담 40%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알기쉬운 정책



24시간 1:1로 돌봐드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시행

→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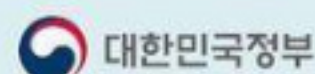
-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24년 6월부터)

- 주간 그룹형 1:1 지원 (신설)
- 주간 개별 1:1 지원 (신설)
- 24시간 개별 1:1 지원 (전국 확대)
→ 낮 활동, 야간돌봄 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